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2. 5. 30. / (총 10매)	담당부서	재정운용담당관
과 장	박 창 규	전 화	044-202-2320
담 당 자	구 미 정		044-202-2321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 확정

- ◆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 수급기준·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 원 1회 한시 지원(9,902억 원)
- ◆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기준 중위소득 26→30%)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주거용 재산기준 공제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873억 원)
-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액(21,532억 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701억 원) 지원

□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 3,697억 원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 8,650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 원에서 101조 4,1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원~최대 145만원 1회 한시 지원 (+227만 명, +9,902억 원)



○ (긴급복지 기준 완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11만건, +873억 원)

* (생계지원금 단가) 기준중위소득 26→30%(4인 가구 기준, 1,304.9천원→1,536.3천원)

**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65%→100%)

○ (기초연금)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년도 기준연금액 인상 (301,500원→307,500원)에 따라 금년 예산 부족액 확보 (+1,755억 원)

* 기준연금액 예산편성은 '20년 물가상승률(0.5%) 반영, 실제 지급은 '21년 물가상승률(2.5%)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산 부족액 발생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 (의료기관등 손실보상)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폐쇄, 업무정지, 소득 등)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2조 1,532억 원)

○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701억 원)

□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고유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부서

3. 사업별 참고자료



붙임 1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 기존예산 : '22년 본예산 + '22년 1회추경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최종예산 (A)	'22년			주 요 내 역
		기존예산* (B)	제2회 추경 (C)	최종 예산 (D=B+C)	
계	190,579	179,301	34,763	214,064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2,960	-	9,902	9,902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아동 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한 시적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약27만가) *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4인가구 기준 75만원~100만원
긴급복지	6,815	2,156	873	3,029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소요 : 18,493백만원 - 재산기준 완화 소요 : 68,825 백만원
기초연금	149,635	161,140	1,755	162,895	물가상승률 상승(0.5~2.5%)에 따른 기준연금액 상승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9,010	15,400	21,532	36,932	'22년 5~12월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지원금 : 434,561백만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2,159	605	701	1,306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70,080백만원

※ 공통경비 감액 등 지출 재조구화를 통해 △1,066억원 감액

붙임 2

사업별 담당부서

사업명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기초생활보장과	민영신 과장 (044-202-3051)	정서영 사무관 (044-202-3054)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과	민영신 과장 (044-202-3051)	전인수 사무관 (044-202-3058)
기초연금	기초연금과	송명준 과장 (044-202-3670)	정지인 사무관 (044-202-3676)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임동민 팀장 (044-202-1890)	정장훈 사무관 (044-202-1885)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인력 등 인건비)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	황의수 팀장 (044-202-1831)	박서영 사무관 (044-202-1843)

참고 1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

* '22.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 4.3%

** 소득분위별 체감물가상승률(%) : 1분위 27 > 2분위 24 > 3분위 22 > 4분위 21 > 5분위 19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 (지급방법·시기)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7월중)

- (지원금액)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지급)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 지원기준 및 집행방법

- (지원기준)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가구

*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자 포함

*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50%의 가구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 지급

- (지원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 (지급방법) 현금지원은 지양, 지원취지를 고려한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카드형만 가능)도 활용 가능

- (추진체계)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Q&A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생계비 부담 완화라는 지원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이(유흥·향락·사행업소 등)가 가능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를 지급할 계획임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카드형만 가능)도 활용 가능

2.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지?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2년 추경 국회 통과일('22.5월말 예상)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지급할 예정임

*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 지급

3. 지원대상은 언제 기준으로 확정되는지?

- 지원기준일인 추경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으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을 보유 해야함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 다만, 기준일인 국회 의결일 전일까지 기초생활수급 등 지원대상 자격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분들도 포함하여 지원 예정



참고 2

긴급복지지원제도(2022년 2회 추경 이후)

- (사업목적)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소득·재산 기준 충족 가구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453,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 (재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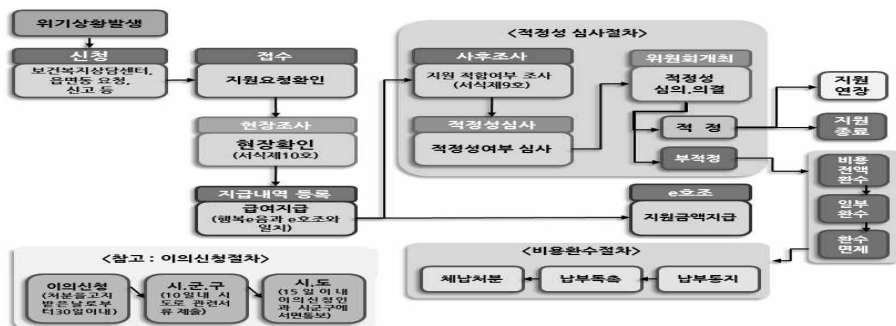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액	2억 4,1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3,000만원
공제한도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금융재산) 600만원(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65%→100%

- (지원금액)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 시도(보조금교부) → 시군구 (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 지원대상 가구(현금지급)



참고 3

기초연금

- (개요) 국민연금 미가입·저연금자 등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14년, 노인 70%)

-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②소득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

** ('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 (지원내용) '21년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하여 '22년부터 월 최대 30.75만원으로 인상(부부 49.2만원)

- (신청하실 수 있는 분)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 (문의하실 곳)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참고 4

손실보상 개요 및 지급 현황

- **[지원목적]** 코로나로 인한 의료대응체계 지원, 안정적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유지 등을 위해 관련 법상* 근거에 따라 손실보상 지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 **[지원내용]** ①확진자 진료 위한 확보·소개병상, ②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수의 손실, ③확진자 방문에 따라 폐쇄·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등

- **[지급절차]** ①손실보상 청구(심평원, 지자체)→ ②병상단가·전년도 진료(영업) 수익 고려 지급규모 산정(심평원, 손해사정사회)→ ③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 지급

* 위원장·복지부차관, 병·의협·약사회·건보·손해사정·의료분쟁조정 전문가 등 총 14명 구성

** 손실보상 대상·기준 및 단가 등은 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에서 결정

- **[지원현황]** '20.4월~'22.4월까지 총 5조 9,400억원* 지급(월 단위 지급)

* 20년 9,399억원, 21년 29,010억원, 22년 1~4월 20,991억원

- ① **(의료기관)** 환자치료·선별진료소 등 총 25차, 5조 7,519억원 지급

(단위: 개소, 억원)

구분	합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폐쇄 업무 정지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타 치료의료		
기관수	585	462	297	119	34	95	211	1	93	31
금액	57,519	56,808	31,443	12,903	14,410	29,071	37,338	25	680	31

- ② **(폐쇄·업무정지기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총 20차, 1,881억원* 지급

(단위: 건, 억원)

구분	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부대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64,706	1,882	7,687	1,624	4,324	42	52,468	194	219	12	8	10

참고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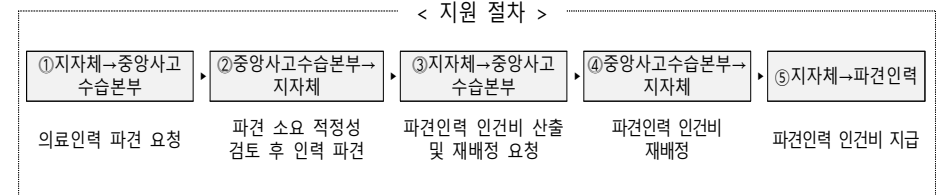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목적)**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 **(지원대상)**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파견 의료인력

- **(지원내용)** 파견 의료인력(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인건비, 고용부담금 및 출장비 지원

- **(지원절차)**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자체로 예산 재배정 후 지자체에서 파견 의료인력에게 인건비 지급



- **(지원현황)** '20.1월 검역 지원에 공중보건 의사(3명)를 파견한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체채취 및 확진자 치료 등의 업무에 24,604명(중복 포함)의 의료인력 파견

< 누적 근무인원(5.29일 기준) >

(단위 : 명, 중복 포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2월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29.현재	
계	6,577	8,959	10,068	13,020	17,526	19,609	21,643	23,671	24,397	24,604	
의사	계	2,532	3,102	3,536	4,177	5,108	5,433	5,694	6,089	6,239	6,346
	군·의관	273	326	326	412	632	747	827	1,055	1,078	1,100
	공보의	2,122	2,506	2,927	3,417	4,021	4,195	4,341	4,479	4,585	4,663
	민간	137	270	283	348	455	491	526	555	576	583
간호사	2,704	3,800	4,207	5,903	8,208	9,428	10,584	11,639	11,974	12,037	
간호조무사	701	928	944	1,042	1,459	1,631	1,858	2,064	2,157	2,161	
임상병리사	460	727	923	1,282	1,700	1,894	2,015	2,131	2,159	2,181	
방사선사	51	88	99	148	205	247	285	316	337	340	
요양보호사	123	259	304	413	768	885	1,087	1,297	1,393	1,400	
간병인	6	55	55	55	78	91	120	135	138	139	